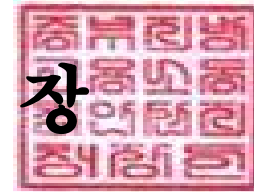
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12. 7.

###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| 연번 | 성명  | 생년월일     | 서류의 명칭  | 서류의 주요 내용   |   | 송달불능 사유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|----------|---|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    |          |   | 처분사유  |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  | 손O용 | 03.11.1. |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리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|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<br>- 1차 출석통지: 2022. 10. 14.<br>- 2차 출석통지: 2022. 10. 28. | 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<br>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| 폐문부재    |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106 (이하 생략) |

4. 공고기간: 2022.12.7. ~ 2022.12.21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경제영(Tel. 031-496-19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